

지 정 토 론 (3)

이 재 진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공인 관련 보도의 언론분쟁 현황

언론에 의한 공인 보도는 언론의 자유를 논의할 때 가장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김 교수님은 발제문 결론부분에서 공인보도가 대단히 중핵을 차지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저도 이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한 조사에 따르면, 공인보도 허용의 확대 또는 확장은 우리 법원이 우리나라의 언론을 단순히 건전한 여론형성기관으로 판단하다가 점차 권력의 남용을 감시비판하고 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파수견의 기능을 인정하는 시기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즉 언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의 변화 또는 강화가 공인보도의 허용 폭을 확장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현재 공인에 대한 보도 정도를 본다면 상당한 부분 보도가 허용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언론의 공인보도 쟁점처럼 많이 논의되어 오면서도 아직도 무엇인가 미해결 상태로 애매하게 남아있는 쟁점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인보도 쟁점은 현재까지 판례의 집적이 꽤 이루어져 있으며 학계에서의 논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온 반면 명확한 해결의 기준이 드러나지 않는 쟁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언론은 보도에 있어 항상 불안한 입장에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의 초상권과 관련된 쟁점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언론관련 보도로 인한 소송에 있어 일반인의 승소율이 약 75% 이상 정도인데 반해 공인의 경우 승소율은 약 40% 이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법부에서도 공인이론이 전면적으로 수용되고

판결에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판례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우리 법원은 공인과 사인을 구분해서 다르게 이익형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인보도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가에 대해서는 교과서적인 해답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토론자의 입장에서는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우리 법원이 공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인(또는 공적 인물)이 누구인가를 일의적으로 단언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공인에 대한 판단의 기준틀이 제공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인에 대한 보도를 해야 하는 언론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로부터 위축되지 않고 힘차게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측력이 대단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미국의 공인 관련 판례 및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말부터 언론은 지속해서 법원이 공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언론 스스로 공인이란 이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정의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법부는 공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발제에서도 언급하셨지만 1974년 소위 거츠(Gertz)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반적 사인과 공적 인물을 구분하면서, 공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공인은 “사회적으로 특별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공적인 논의에 설득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사람”(those who assumed roles of special prominence in the affairs of society [and] occupy positions of such persuasive power and influence that they are deemed public figures for all purposes)으로, 그리고 제한적 공적 인물을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특정한 공적 논쟁의 전면에 나선 사람”(people who have thrust

themselves to the forefront of particular public controversies in order to influence the resolution of the issues involved)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345 (1974)).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정의가 이후의 유사한 하급심 판결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공적 인물에 대한 정의를 내린 이후 하급심 연방법원들은 공적 인물을 논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미디어에 접근한 사람(who have (1) voluntarily participated in discussing the controversy, and (2) have access to the media to make their views known)으로 이해했습니다(Barry v. Time Inc., 584 F. Supp. 1110, 1113-22 (N.D. Cal. 1984); Reader's Digest Ass'n v. Superior Court, 37 Cal. 3d 244, 254 (1984)). 또한 공적 인물이란 공중에 널리 알려진 유명인들이나 인지도가 높은 사건들에 자발적이거나 또는 우연히 관련되어 유명해진 사람으로 이해되었습니다(Carson v. Allied News Co., 529 F.2d 206 (7th Cir. 1974)).

이처럼 미국 연방대법원의 공적 인물에 대한 정의는 공적 인물을 이해하는 하나의 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준을 상황에 맞게 판결에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록 공적 인물이 누구인가를 두고 많은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나 공적 인물이론이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공인 관련 판례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사법부는 공인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바는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판결들에서 공인에 대한 파편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의 예를 들어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1> 공인에 대한 평가

번호	판결	공인관련 이해(평가) 요지
1	서울지방법원 1995.6.23. 선고 94가합9230 판결	이휘소는 뛰어난 물리학자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공적 인물이 되었고 이휘소가 사망한 지 이미 18년이 경과하였으므로...
2	서울지방법원 1995.6.27. 선고 95가합3438 결정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뛰어난 기업인으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하고....
3	헌법재판소 1999.6.24. 선고 97헌마265 결정	공적 인물이 그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4	서울지방법원 2001.5.31. 선고 2000나11081 판결	국민의 정보욕구 또는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과 같은 공인에 있어서는 그 정보가 사인에 비하여 폭넓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나, 공적인 인사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사생활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다.
5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6	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7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그 기고문의 게재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자 등의 수인의 범위를 넘어

8	대법원 2011.9.2. 선고 2008다42430 판결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기본적인 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므로(변호사법 제1조, 제2조),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
---	-----------------------------------	--

위의 <표 1>에서 나타난 우리 사법부의 공인에 대한 이해를 요약하면, ‘공직자를 포함한 공인이란 국민의 귀감이 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도덕적이고 정당하게 공적 활동을 해야 하는 존재로서 이들에 대한 정보는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며 언론의 감시·비판·견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아직은 공인을 공직자와 유사한 인물처럼 이해하고 있으며, 대중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끌고자 하고 미디어에 의해서 유명해진 인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인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해가 단순히 몇 건의 판결례를 근거로 한 것이지만 우리 사법부의 공인에 대한 이해는 상당한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지닌 인물을 상정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편적인 공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는 공인이 어떠한 인물인가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아직도 공인 보도에 대한 논의가 답보상태에 남아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사법부도 공인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미국의 거츠(Gertz) 사건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내린 공인에 대한 정의와 같이 하급심 법원이 공인이 누구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정의를 내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사법부에서도 지적하듯이 ‘시간과 싸우는 신문보도에 오류를 수반하는 표현’이 나올 가능성을 줄이고 언론의 파수견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